

파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및건강생활실천협의위원회조례안

의안 번호	3-267
----------	-------

제출년월일 : 2004. 6. 10.

제출자 : 파주시장

□ 제안이유

-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지역 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파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하여 왔으나,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형식적으로 구성·운영됨에 따라 유사 성격의 위원회와 통합·운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임은 물론 보건행정의 내실화를 통해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가. 지역보건법시행령 및 국민건강증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함(안 제1조).
- 나. 위원회는 지역 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시행, 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협의·조정·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함(안 제2조).
- 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지역주민·시의원·보건의료관련 전문가 등이 골고루 참여하도록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안 제3조 및 제5조).
- 라.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함(안 제7조).
- 마. 시장은 위원회가 협의·심의·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시책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함(안 제9조).

과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및건강생활실천협의위원회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과주시 보건의료시책의 추진과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과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및건강생활실천협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조정·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 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의 협의·조정
5. 주민의 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
6. 기타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보건소장 및 사회산업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지역주민
2. 시의회 의원
3.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4. 보건의료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5. 학계·언론계에 종사하거나 관계유관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각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6. 관계공무원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건 의료관련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임직원의 경우는 당해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질병 및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행정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보건행정담당원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 (협의·심의·조정사항의 처리) 시장은 위원회가 협의·심의 및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파주시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파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 및 파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는 각각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파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와 파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의 공포와 동시에 해촉 된 것으로 한다.

파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및건강생활 실천협의위원회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제정조례안은 2004년 6월 10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6월 1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지역 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파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하여 왔으나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형식적으로 구성·운영됨에 따라 유사 성격의 위원회와 통합·운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임은 물론 보건행정의 내실화를 통해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지역보건법시행령 및 국민건강증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위원회를 구성·운영 함. (안 제1조)

나. 위원회는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시행, 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협의·조정·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함. (안 제2조)

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지역주민·시의원·보건의료관련 전문가 등이 골고루 참여하도록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안 제3조 및 제5조)

라.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 또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함. (안 제7조)

마. 시장은 위원회가 협의·심의·조정 한 사항에 대하여 시책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함. (안 제9조)

3.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와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규정에 근거하여 각각 설치·운영하고 있는 파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파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임.

○ 현행 파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지역 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수행·평가 등의 기능 수행을 하고 있으며, 파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시민 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및 시행, 시민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 기능 수행을 위해 개별법에 의해 설치 운영되고 있음.

○ 그동안 파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파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지역보건 의료와 시민건강 증진이라는 공통된 설치목적으로 유사성격을 갖고 있어 통합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왔고 또한 정부방침도 각종위원회의 축소내지는 통합운영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어 금번 관련 조례를 통합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임.

○ 한편 경기도와 부천시 등 도내 10개 시군에서도 동 조례를 통합운영하고 있으며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동 조례를 통합운영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 실정임.

○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안 제1조에서는 제정조례안의 법적근거와 위원회 설치목적,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위원회는 지역 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행, 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사항 등 위원회의 기능을 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5조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시의회 의원·지역주민·보건의료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도록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는 등 위원회 구성과 위원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회의소집 및 회의방법 등을 정하였음.

안 제9조에서는 시장은 위원회가 협의·심의·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이나 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였으며 부칙에서는 현행 “파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와 “파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를 폐지하고 현재 위촉된 위원은 제정조례 공포와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하였음.

- 이상과 같이 동 조례안은 현행 조례를 통합하여 새로 제정하는 것으로 조문구성이나 조문내용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조례제정 취지도 지역 내 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행을 포함한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시민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지원 등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유사성격의 위원회를 통합·운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보건행정의 내실화를 통해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2003. 09. 09 법률 제06983호]

제10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①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⑤기타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